미래의 중심도시, 수도권의 새로운 심장 검단구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표준 가이드라인

2026. 8.

검 단 구

목 차

Ⅰ	총칙	3
Ⅱ	법적 의무 이행 기준	4
Ⅲ	충전구역 및 시설 설치 절차	6
Ⅳ	보조사업	8
Ⅴ	자주묻는 질문	10
참고	신고서 서식 등	14

Ⅰ 총칙

1. 목적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개정·시행에 따른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와 관련한 내용을 담아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되었습니다.

2. 관련 규정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 「한국전기설비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제2025-227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산업통상부)

○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 안전 매뉴얼」(국토교통부)

3. 정의

①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② “충전시설”이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③ “충전구역”이란 충전시설이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④ “전용주차구역”이란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말한다.

Ⅱ 법적 의무 이행 기준

1. 의무 설치 대상 및 설치 기준(법적 기준)

①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② 의무설치 시설 :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③ 의무설치 기준

구 분	대상기준	급속충전시설		설치기한
		충전시설	전용주차구역	
신축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2022년 1월 28일 이후 건축허가 단지)	5% 이상 (* 충전시설의 5%이상 급속충전시설로 설치)	5% 이상	준공시점
기축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2022년 1월 28일 전 건축허가 단지)	2% 이상	2% 이상 (*LH 5%이상)	'26년 1월27일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전용주차구역의 5% 이상 설치하여야 함.[관리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한 경우도 포함]

<예 시>

1. (기축 아파트) 총 주차면수가 580면의 500세대 인 경우

→ 설치 의무 대상으로 충전시설 12대 이상 설치 및 전용주차구역 12면 이상 표시하여야 함

(580면×2%=11.6 소수점 반올림하여 계산)

2. (신축 아파트) 총 주차면수가 580면의 500세대 인 경우

→ 설치 의무 대상으로 충전시설 29대 이상 설치 및 전용주차구역 29면 이상 표시하여야 함

(580면×5%=29 소수점 반올림하여 계산)

→ 충전시설 29대 이상 설치 시 급속충전시설 1대 이상 설치하여야 함

(580면×5%=29 / 29×5%=1.45 / 소수점 반올림하여 계산)

* 주차면수 50면 이상 시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 의무설치

※ 설치 의무 대수 이외 추가로 설치하는 충전시설은 전용주차구역 표시 의무대상아님

(의무대수 외 추가 설치 경우에도, 구역 내 전용주차구역 표시한 경우 충전구역이 되기 때문에 충전구역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④ 충전시설의 종류

구 분	급속충전시설	완속충전시설
공급용량	40㎾이상 시설	40㎾미만 시설 (과금형콘센트* 포함)
충전시간 (64kwh 배터리기준)	100㎾출력시 1시간 내외	7㎾출력시 10시간내외

*과금형 콘센트: 이동형충전기 또는 휴대용충전기 등을 연결하여 구동축전기를 충전하고 이에 따른 과금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콘센트(둘 이상의 콘센트가 설치된 때에는 동시에 각 콘센트를 이용할 수 있는 것에 한함)

⑤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 설치기한까지 충전시설 또는 전용충전구역 미설치 시 시정명령 대상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1회 반복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위반내용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친환경차 충전시설 설치의무 미준수시 (개당)	충전시설 통상설치비용(50만원)의 20%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 미준수시 (개당)	전용주차구역 설치비용(9만원)의 20% × 공영주차장 월정기 주차요금 하한액 × 최대 12개월

⑥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대상(위반행위)	과태료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하는 행위	10만원
전기차가 급속충전구역에 **1시간이** 지난 후에도 주차(충전)하는 행위	10만원
전기차가 완속충전구역에 **14시간** 지난 후에도 주차(충전)하는 행위 *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의 경우 7시간 이내(제외시간 : 오전0시~오전6시)	10만원
충전구역내 및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이중주차**하는 행위	10만원
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10만원
고의로 충전시설 및 구획선, 문자 훼손한 경우	20만원

Ⅲ 충전구역 및 시설 설치 절차

1. 충전구역 및 시설 설치 기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기설비규정」을 준수하여 설치

② 설치 위치 선정

○ 원칙 : 화재 예방 및 소방활동을 위해 지상주차장 설치 권장

○ 지하 주차장 설치 시

- 피난 및 소방 진입이 용이하도록 지하 1층 및 주차장 출입구 인근 배치 권고
- 차량 충돌 방지를 위해 차량 스토퍼와 볼라드를 필수 설치

○ 충전구역과 소화설비 사이 5m이상 10m 이내의 안전거리 확보 권장

○ 건물외벽, 놀이터 등 시설물과 일정거리 유지, 조경수가 없는 곳에 설치 권고(건물 10m, 놀이터 20m 이격 등)

③ 전용 주차구획 표시

○ 충전구역은 일반 주차구획 규격에 맞춰 구획하되, 전기차 전용 구획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녹색 바탕에 흰색 문자로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을 표시

***충전구역의 바닥면 표시 예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④ 화재 안전 시설 준수

❍ 스마트 제어 충전기 우선 도입 : 한국환경공단 보조금 지원 시, 과부하를 방지하고 화재 징후를 사전 감지하는 스마트 제어 기능(화재 예방형) 충전기 설치 조건 이행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 안전 매뉴얼에 따라 구축 권장

- 화재감지 및 소방 설비 : 충전구역 상부에 아날로그 연기 감지기와 반응이 빠른 조기 반응형 스프링 클러 헤드 설치(습식 스프링 클러 배관 권장)
- 소화기 배치 : 전기차 충전구역과 적정 거리(5m 이상 ~ 10m 내)를 두고 전용 소화기를 비치
- CCTV 카메라 및 모니터링 : 충전기 상태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전용 CCTV를 정면으로 바라보게 설치

2. 인허가 및 행정절차

의사결정 및 입주민 동의	○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	
공동주택 행위신고(허가) 및 충전시설 설치 신고	**○ 관리주체 → 검단구청 주택과** - 행위신고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조서, 충전기 설치 위치가 표시된 설계도면(배치도) **○ 충전시설 설치자 → 인천시청 에너지정책과** * 별지1 참고
↓	
전기신청 및 설치공사	○ 시공사 → 한국전력공사 ○ 시공 : 전문 면허를 보유한 전기공사업체에서 시공
↓	
책임보험 가입 안전관리자 선임	○ 충전시설 관리자 → 보험사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 외부 충전사업자 : 충전사업자가 가입 - 아파트 자체 소유·운영 시 : 아파트 관리주체
↓	
사용전 검사	○ 시공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 사용전검사 합격 후 필증 수령 후 가동

3. 보험가입 및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①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 대상 : 의무설치 대상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설치 된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

○ 가입주체 : 충전시설의 관리자

- 외부 충전사업자 소유·운영 시 : 충전사업자 가입

* 관리사무소는 계약서 상 책임 소재와 실제 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아파트 자체 소유·운영 시 : 아파트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보험가입

○ 가입시기 : 충전시설 사용 개시 전(전기 공급 전)

○ 기타사항 : 미이행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근거법령 :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3

②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 신고기관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 신고시기 : 충전기 설치 공사 진행과 동시 신고

Ⅳ 보조사업

1. 완속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 지원대상 : 공동주택 등의 소유·운영주체 중 *공용 완속 충전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자

※ 공용충전시설이란 사용자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두 이용 가능한 충전시설

○ 시행기관 : 한국환경공단

○ 시행시기 : 매년 시행

○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년도별 상이, 매년 한국환경공단 공고)

- 한국환경공단 무공해통합누리집(ev.or.kr) 공고 확인 必

< 참고, 2026년 완속 충전시설 보조금 지원단가>

충전기 구분	보조금 최대 지원단가(만원)
① 11kW 이상 충전기	240(1기), 220(2기～5기), 200(6기 이상)
② 7kW 이상 충전기	(신규) 220(1기), 200(2기～5기), 180(6기 이상) (교체) 110(1기), 100(2기～5기), 90(6기 이상)
③ 전력분배형 충전기	①~② 용량별 지원단가에 케이블 1기당 30만원씩 추가 지원

2. 인천광역시 전기차 완속충전시설 설치 이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공동주택에 설치된 공용 완속충전시설

○ 지원내용 : 공동주택 지하2층 이하에 설치된 완속충전기를 지하 1층 또는 지상으로 설치를 지원

* 사업수요가 없을 경우 지하1층 완속충전기를 지상으로 설치 신청 가능

○ 지원기준 : 충전기 1기당 최대 300만원 지원(시비 70%, 자부담 30%)

※ 매년 인천시 공고 확인 必

○ 접 수 처 : 검단구청 서관 2층 경제정책과

○ 신청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충전기 운영계약서, 입주자대표회 의결서, 충전사업자 등록증, 전기신사업자등록증, 사업비 산출내역서[붙임 2 참고]

Ⅴ 자주묻는 질문

Q1. 공동주택에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야 하는지?

○ 공동주택 내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3]제6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주택 내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설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Q2. 입주율이 50% 미만인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없이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고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입주율이 50% 미만인 공동주택에서는 사업주체가 「친환경자동차법」 상 설치의무를 부담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Q3. 공동주택의 기축·신축을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 현행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라 2022년 1월 28일 전에 최초 허가를 받은 100세대 이상의 기축아파트는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2이상의 범위에서 설치하여야 합니다.

Q4. 기존 주차장에 건물을 증축하여 총주차대수가 변경된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기축 · 신축을 결정하는지?

○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하는 신축을 제외하고 증축·개축·재축·리모델링·대수선 등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건축행위는 최초 건축허가일이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시행일인 2022년 1월 28일 이전이면 기축시설에 해당합니다.
이때 증축·개축·재축 등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총주차대수에 변경이 있다면 변경 기준으로 설치 수량을 산출합니다.

Q5. 2025년 1월 1일 이후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1항제4호 다목에 따라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콘센트를 설치해야 하는데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7에서 신축시설은 충전시설을 100분의 5 이상을 설치하도록 함. 어떤 법을 우선하여 설치해야 하는지?

○ 충전시설 및 충전용 콘센트에 관한 「친환경자동차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모두 효력을 갖습니다.

○ 그러므로 2025년 1월 1일 이후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은 총주차대수 100분의 5 이상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총주차대수 100분의 10 이상 충전용 콘센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2항을 고려할 때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한 급속충전시설, 전형적인 완속충전시설, 충전용 콘센트를 모두 합하여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 설치하면 「친환경자동차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표시는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의무설치 수량만큼만 표시하면 되고 바닥면이 표시되지 않은 구역은 충전 방해 행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Q6. 콘센트형 충전기는 완속충전시설로 인정되는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전기자동차에 이동형충전기 또는 휴대용충전기 등을 연결하여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이에 따른 과금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콘센트’를 완속충전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시 규정에 해당하는 콘센트형 충전기의 경우 완속충전시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때 콘센트형 충전기가 설치된 충전구역이 의무설치 수량으로 인정받으려면 충전기 설치와 함께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제18조의8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른 바닥면 표시도 이행되어야 합니다.

Q7. 급속충전시설 100킬로와트 2채널, 완속충전시설 14킬로와트 2채널을 설치하면 4개의 충전시설로 인정되는지?

○ 다채널충전시설의 기준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채널충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의무설치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최대 수량은 급속충전시설은 최대출력을 40킬로와트로 나눈 값으로, 완속충전시설은 최대출력을 3킬로와트로 나눈 값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채널로 급속 100킬로와트에 2채널, 완속 14킬로와트에 2채널을 설치하는 경우 4개의 충전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때 다채널충전기가 설치된 충전구역이 의무설치 수량으로 인정받으려면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제18조의8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른 충전구역 바닥면 표시는 필수요건이므로 충전기 설치와 함께 4개의 전용주차구역 표시도 이행되어야 합니다.

Q8. 100세대 이상 아파트로서 총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이지만 아파트 주민 중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 보유대수가

없다면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를 예외할 수 있는지?

○ 입주자들의 전기자동차 소유 유무와 상관없이 공동주택의 경우 100세대 이상이면서 총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이면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입니다. 이때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없다고 하여 설치가 예외될 수 없습니다.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다목에 따라 등록된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수가 설치된 충전시설의 수보다 적다면 초과수량의 범위에서 병행주차구역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Q9. 화재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특정 위치에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 지?

○ 2023년 12월 개정된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는 개정 이후 설치하는 친환경자동차의 충전시설은 지하 3층 이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금형 콘센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10. 내연기관(휘발유, LPG등) 차량이나 저공해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은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한 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조의2에 따라 제1종부터 제3종까지 저공해자동차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으며,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종 저공해자동차인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와, 제2종 저공해자동차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할 것이나, 제3종 저공해자동차로 등록된 내연기관 자동차는 주차 가능한 차량이 아니며,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참 고 서 식

【붙임 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변경)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나. 제출처 : 인천광역시 에너지정책과(문서24, 방문, 등기, 팩스, 메일 접수 가능)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 처리기준

가. 신청서류 서식 작성 제출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없음(단순신고)

나. 처리주무부서 : 인천광역시 에너지정책과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민원인)		(시 에너지정책과)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개정 2025. 11. 26.>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변경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신고내용	충전시설 위치 (설치주소)				
	충전시설 설치 사업장	사업장 명칭 또는 상호 (전화번호:)			
	충전시설 설치수량	지상	옥외 개, 층 개, 층 개, 층 개	합 계 : 개	
		지하	층 개, 층 개, 층 개	합 계 : 개	
	충전시설 규격	완속	종류	전기용량(kW) 및 갯수	합 계 : 개
				kW: 개, kW: 개, kW: 개	개
				kW: 개, kW: 개, kW: 개	개
				kW: 개, kW: 개, kW: 개	개
					개
		급속	종류	전기용량(kW) 및 갯수	합 계 : 개
				kW: 개, kW: 개, kW: 개	개
				kW: 개, kW: 개, kW: 개	개
				kW: 개, kW: 개, kW: 개	개
	충전시설 운영자	회사명 또는 상호	운영 수량 개		
		회사명 또는 상호	운영 수량 개		
		회사명 또는 상호	운영 수량 개		

변경 사유	[]충전시설의 위치 []충전시설의 설치수량 []충전시설의 규격(충전시설의 전기용량을 포함합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자의 회사명 또는 상호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신고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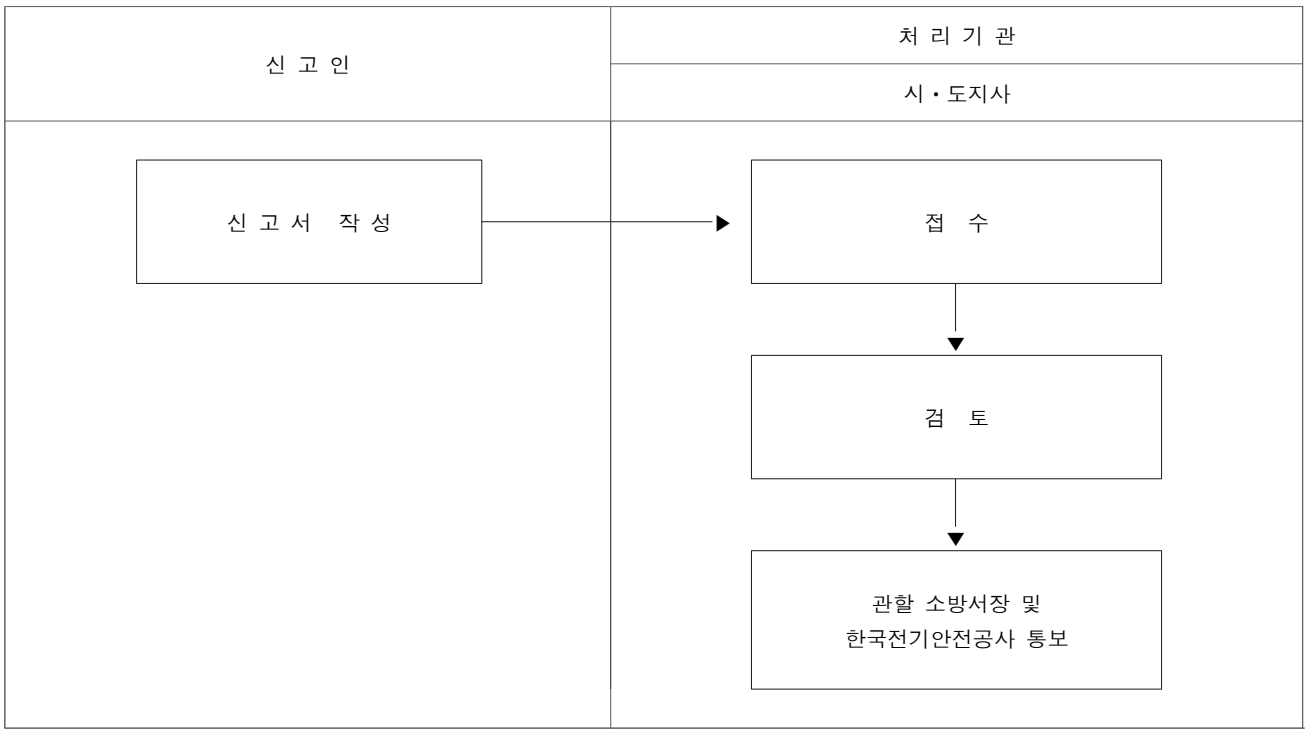
시·도지사 귀하

작성방법

1. 신고인란에는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인의 성명 또는 전화번호 등을 적고,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에 회사명 또는 상호란은 공란으로 둡니다.
2. 충전시설 설치 사업장란에는 해당 충전시설이 설치되는 사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3. 충전시설 규격란에는 완속충전시설(40kW 미만)란 및 급속충전시설(40kW 이상) 기준으로 충전시설 종류(스탠드형, 벽부착형, 과금형콘센트)와 해당 종류별 전기용량과 갯수를 각각 적습니다.
4. 충전시설 운영자란에는 충전시설 운영수량이 많은 순서대로 적습니다.
5. 변경사항란에는 √표된 변경사유에 대한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297㎜[백상지(80g/㎡)]

【붙임 2】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이전 지원사업 신청서

<table>
<tr><td>공동주택명</td><td></td><td>보유 주차면수/
충전기설치대수</td><td colspan="2">면
기</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신 청 자</td><td colspan="2"></td><td>연락처</td><td></td></tr>
<tr><td rowspan="2">충전사업자</td><td rowspan="2"></td><td>담당자명</td><td colspan="2">연락처</td></tr>
<tr><td></td><td colspan="2"></td></tr>
<tr><td>신청금액</td><td colspan="4">원</td></tr>
<tr><td>신청수량</td><td colspan="4">기</td></tr>
<tr><td>의무사항</td><td colspan="3">- 충전시설 소유자의 충전시설 유지관리 기간은 환경부 지침에 따른다.</td><td>(서명)</td></tr>
<tr><td>주의사항</td><td colspan="3">- 지원사업 보조금은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을 말하며, 보조금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충전시설 이전 비용은 신청자 등이 부담한다.</td><td>(서명)</td></tr>
<tr><td>충 전 기
위치정보
표시안내</td><td colspan="3">-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위치, 상태정보 표시
-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더라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충전시설 위치, 상태정보, 이용 가능자의 범위 표시</td><td>(서명)</td></tr>
</table>

2025년도 인천광역시 전기차 완속충전시설 이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서에 기입한 사항이 틀림 없음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 리 사 무 소 소장 (인)

검단구청장 귀하

※ 구비 서류 : 충전기 운영 계약서, 입주자대표회 의결서 사본(이전 동의), 충전사업자 등록증, 전기신사업자등록증, 사업비 산출내역서